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8. 4. 17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4월 6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4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8. 4. 1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안전건설국장 연동열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우리구 근거 조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로 변경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개정(안 제1조)
- 위원회 해촉 규정 신설(안 제2조의2)
- 위원회 검토 대상 및 검토사항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3조)

○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인재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5항이 2017.1.28 개정되어 시,군,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문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존속 및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로 변경 및 위원회 검토 대상 및 검토사항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

○ 주요 제정 내용은

- 제명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으며
-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,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거 법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로 변경 정비하였고,
- 안 제2조의2를 신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부칙에서 신설 조항에 대한 시행 시기를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고
-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검토 대상을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으로 구체화하였고
-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상위법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2017.1.28 일부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자문기구인 동 위원회의 존속 및 운영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근거규정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로 법령 및 조문을 변경 정비하고 또한 현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62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로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개정(안 제1조)
- 나.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(안 제2조의2)
- 다. 위원회 검토대상 및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(안 제3조)
- 라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: 「자연재해대책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 - 3) 부패영향평가: 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명시 요청 하여 반영함
- 라. 입법예고(2017.12.14. ~ 2018.1.3. / 20일간) 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“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”을 “위원장 1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해촉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

2.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

3. 그 밖에 공적·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
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회는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른
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사업이”를 “사업으로 인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
제3호 중 “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”을 “사업시행자가 제출한”으로 하며, 같은
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

제4조제1항 중 “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”를 “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
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”로,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
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
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중 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”를 “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
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, 참석위원”을 “재적위원 과반수의
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”를 각각 “사전재해영향성 검
토협의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”를 “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
요청서”로, “필요하면”을 “필요한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 본문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2(위원의 해촉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서식]

○○ 계획(사업)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

1. 총괄의견

2. 세부(분야별)검토의견

3. 기타 의견

상기와 같이 ○○계획(사업)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.

. . .

검토자 : (서명 또는 날인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장 귀하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</u> <u>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</u> <u>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자연재해 대책법</u>」 제4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.</p>	<p>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</u> <u>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</u> <u>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구성) ①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</u>는 위원장 1명을 -----.</p> <p>② 위원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

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
되 1회에 제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
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〈신 설〉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사전재해영향
성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
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
다.

1. (생 략)
2. 해당 사업이 인근지역이나 시설
에 미치는 재해영향
3.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
저감계획

〈삭 제〉

제2조의2(해촉) ① 서울특별시 영등
포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위원
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한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
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
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
이용한 경우
2.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
3. 그 밖에 공적·사적 행위로 품위
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
기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
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「자연재해대
책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
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
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
사항을 검토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 사업으로 인하여 -----

3.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-----

4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6
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
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
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
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
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
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
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
사는 도시안전과장이 된다.

제6조(회의) ①、② (생략)

③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
으로 시작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
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검토의견 제출) ① 위원장은
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에게 사전재
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에 대한
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제출
하게 할 수 있다.

② 사안별 지정위원은 제1항에 따
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
항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
검토하고,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
제출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

4.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
중점검토항목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안전건
설국장으로 하고, -----총괄한
다.

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
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
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
대행한다.

제5조(간사) 제6조에 따라 회의를
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
제반사항 등을-----.

제6조(회의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재적위원 과반수
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--
-----.

제7조(검토의견 제출) ① -----
-----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
의의-----
-----.

② ----- 사전
재해영향성 검토협의-----

서식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현지조사) ① 위원장은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안별 지정위원, 사업시행자,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----.

제8조(현지조사) ① -----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-----
-----필요한 경우에는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수당 등) -----

범위-----.

-----.

현행	개정안
<p>[별지 서식]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"> <p>○○ 계획(사업)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총괄의견 2. 세부(분야별)검토의견 3. 기타 의견 <p>상기와 같이 ○○계획(사업) <u>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</u>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 . .</p> <p>검토자 :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<u>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 귀하</u></p> </div>	<p>[별지 서식]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"> <p>○○ 계획(사업)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총괄의견 2. 세부(분야별)검토의견 3. 기타 의견 <p>상기와 같이 ○○계획(사업) <u>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</u>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 . .</p> <p>검토자 :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장 귀하</u></p> </div>